

# 선수 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 목 차

제1조. 프로계약 .....	3
제2조. 계약기간 .....	3
제3조. 연봉 (기본급연액 및 수당) .....	4
제4조. 계약승인 및 수정 .....	5
제5조. 선수 등록 .....	5
제6조. 스태프 등록 .....	7
제7조. 군(軍) 입대 및 학교 진학 선수 .....	8
제8조. 이중국적 보유자 및 귀화의 경우 .....	8
제9조. 자유 계약 선수 .....	9
제10조. 기타 .....	10
제11조. 신인선수 선발 대상 .....	10
제12조. 신인선수 선발 방식 .....	10
제13조. 신인선수 계약 및 등록 절차 .....	10
제14조. 자유선발, 우선지명 .....	11
제15조. 육성 지원금 .....	13
제16조. FA선수 자격 취득 .....	13
제17조. 계약기간 만료 선수 공시 .....	14
제18조. 계약기간 만료 선수와의 교섭 및 계약 체결 .....	14
제19조. FA선수 이적료 .....	15
제20조. 해외이적 FA선수의 국내복귀 .....	15
제21조. 미계약 FA선수 .....	16
제22조. 이적 .....	16
제23조. 선수 임대 .....	17
제24조.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 .....	18
제25조. 선수 연봉 지급 .....	18
제26조. 도핑방지 .....	18
제27조. 보칙 .....	18
부칙 .....	19

## 선수 규정

### 제1조 프로젝트

프로계약은 연맹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선수의 해외 이적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 선수에 대해 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축구연맹 (이하 FIFA)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① 클럽과 선수 간의 프로젝트는 연맹이 정한 프로축구선수 표준계약서에 따라 체결한다.
- ② 클럽과 선수 간의 입단 계약 또는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클럽 대표자(또는 위임받은 담당자)와 해당 선수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선수가 민법상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또는 법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1) 대한축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된 중개인만이 대리인 자격으로 클럽, 선수와 협상 및 계약을 할 수 있다.
  - 2) 중개인에 대한 시행규정(규칙)은 FIFA 및 협회의 규정(규칙)에 의한다.
- ③ 클럽과 선수 간의 계약 체결 시 클럽은 공식 명칭과 클럽 대표자(또는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선수 및 중개인은 본인의 서명(또는 날인)으로 한다.
- ④ 체결된 계약서는 정본 2부를 작성하여 연맹과 협회의 승인을 받으며, 선수와 해당 클럽이 각1부씩 보관한다.

### 제2조 계약기간

- ① 프로선수로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선수의 계약 기간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5년으로 한다.
- ② 국내선수의 모든 계약은 최종 계약 연도의 12월 말일에 종료되어야 한다.

### 제3조 연봉 (기본급연액 및 수당)

- ① 연봉은 클럽이 선수에게 연간 지급하는 기본급연액과 수당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② 연봉은 클럽과 선수 간 합의에 따라 정하되, 본 규정에서 정한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클럽과 선수는 계약기간 중 연봉을 매 연도마다 새로 정하거나 다년간 고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 ④ 기본급연액은 조건과 무관하게 클럽이 선수에게 연간 지급하는 기본 보수를 의미하며, 국내선수의 최저 기본급연액은 이천사백만원(24,000,000원)으로 한다. 단, 군팀(국군체육부대) 소속 선수는 예외로 한다.
- ⑤ 수당은 기본급연액 외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클럽이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수를 의미하며, 아래 각 호의 수당만 인정된다.

- 1) 출전수당
- 2) 승리수당
- 3) 출전승리수당
- 4) 성과수당(득점·도움 등 개인기록, 팀 순위, 우승, 승격, 잔류 등)
- 5) 기타 연맹이 인정하는 수당
- ⑥ 단일 또는 복수 경기의 승리 또는 무승부를 조건으로 선수 및 스태프에게 지급하는 수당(승리수당, 출전승리수당 등)은 아래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클럽이 K리그1 소속인 경우 1회당 100만원
  - 2) 클럽이 K리그2 소속인 경우 1회당 50만원
  - 3) 위 1),2)는 FA컵에도 적용된다.
- ⑦ 클럽과 선수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봉 이외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요구,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아래 각 호의 금전은 예외로 한다.
  - 1) 연맹이 승인한 추가 연봉
  - 2) 경기 및 훈련 등 선수활동, 지역밀착 및 사회공헌활동 등 구단이 선수에게 요구하는 비선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3)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조금 등
- ⑧ 클럽과 선수에게 연봉 외에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대가의 성격을 갖는 금원(계약금, Signing bonus,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 단, 외국 국적 선수에 대한 계약금과 본 규정 제14조에 따른 신인선수에 대한 계약금은 예외로 한다.
- ⑨ 클럽이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연맹은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8조에 따라 해당 클럽을 징계할 수 있다.
  - 1) 본 조 제6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 2) 본 조 제7항을 위반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을 지급한 경우
  - 3) 선수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불한 경우
- ⑩ 클럽과 선수가 본 조 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한 경우 연맹은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8조에 따라 해당 클럽과 선수를 징계할 수 있다.
- ⑪ 연맹은 본 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 클럽 또는 선수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신고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클럽과 선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 계약승인 및 수정

- ① 클럽으로부터 계약 승인신청을 접수한 연맹은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계약을 승인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계약 기간 중 양자 합의에 의하여 계약 갱신 및 수정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양자 서명을 날인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상기 ①항의 승인신청은 기존 계약의 종료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맹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2005년 이후 입단한 신인선수 중 프로 최초 계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선수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의 계약내용(계약기간 포함)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 ④ 표준계약서의 조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과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상에 특약 조항을 기재하여 설정할 수 있다.
- ⑤ 계약서 외의 이면계약을 한 경우, 상별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8조 가.항 (1)호에 의거 처벌된다.
- ⑥ 클럽은 선수의 이적(임대 포함)과 관련되지 않은 계약의 상대방 또는 제3자(선수를 이적시키는 두 클럽 또는 선수가 등록된 적이 있는 이전 소속 클럽 이외인 자)로 하여금 선수의 계약 및 이적 문제에 있어서 클럽의 독립성, 정책 또는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 ⑦ 클럽 또는 선수는 제3자와 향후 한 클럽에서 다른 클럽으로 선수가 이적(임대 포함)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여하는 자격을 제3자가 가지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이적 또는 보상금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가 제3자에게 양도된다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 제5조 선수 등록

- ① 클럽의 등록 선수 수는 외국 국적 선수를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한다.
- ② 클럽은 5명 이하의 외국 국적 선수를 등록할 수 있다. 단, 외국 국적 선수를 4명 이상 등록할 경우 아래 각 호에 따른다.
  - 1) 외국 국적 선수를 4명 등록할 경우 그 중 1명은 아시아축구연맹(이하 'AFC') 가맹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여야 한다.
  - 2) 외국 국적 선수를 5명 등록할 경우 그 중 1명은 AFC 가맹국 국적을 보유한 선수여야 하고, 1명은 AFC 가맹국이면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가입국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선수여야 한다.
- 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를 등록한 경우 제2항의 외국 국적 선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2) 북한 주민으로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3) 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로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4) 그 외 연맹이 정부의 법령해석을 근거로 외국 국적 선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자
- ④ 제3항의 선수는 본 규정에서 선수의 신분 및 계약에 관한 조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외국 국적 선수로 간주한다.
- ⑤ 등록기간은 정기등록기간과 추가등록기간으로 구분되고, 연맹은 등록기간을 정하여 클럽에 공지한다. 등록기간은 매년 변경될 수 있다.
- ⑥ 정기등록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최대 12주 이내로 모든 선수는 이 기간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추가등록기간은 시즌 중 연맹이 지정하는 4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추가등록기간에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신인선수를 등록할 수 없다.

- 1) 클럽 산하의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
  - 2) K3리그, K4리그 등 하부리그 클럽 소속 선수
  - 3) 계약일 현재 소속이 없는 선수
- ⑧ 선수는 당해 연도에는 최대 3개 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공식경기 출전은 2개 클럽에만 가능하다.
  - ⑨ 해외리그에서 영입되는 선수의 International Transfers Certificate (이하 'ITC') 신청은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 선수는 ITC가 연맹에 접수되고 등록공시가 완료된 후 공식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⑩ 선수와 클럽 간에 연봉, 이적료, 보상금에 관한 분쟁 등 등록기간 내에 선수등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클럽은 정기등록 마감일까지 연맹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또는 클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기등록 마감일까지 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선수와 클럽을 당사자로 하는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⑫ 모든 선수는 등록 시 연맹 의무위원회가 정한 'K리그 메디컬 체크 리스트'를 따른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⑬ 선수등록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맹은 해당 선수 및 관계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해당 선수의 등록을 정지하여 공식경기의 출장을 금할 수 있다. 단,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조사가 개시되었을 경우 진술 청취 없이도 해당 선수의 등록을 정지할 수 있다.
  - ⑭ 각 급 대표팀 소집으로 선수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못한 기존 선수, FA선수, 신인선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선수, 외국인선수에 한하여 등록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맹 이사회가 정한다.
  - ⑮ 군제대 선수 및 학교 복귀 선수, 준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등록기간이 아니더라도 연맹이 정한 시점에 등록할 수 있다.
  - ⑯ 본 항의 모든 선수는 출전 대상경기 1일(공시일 포함)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1일전이 주말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주말 또는 법정 공휴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병역복무 복귀 선수의 등록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중복되어 1일전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공휴일 전 업무일까지 등록 신청 후, 전역증 제출과 함께 등록된다.
  - ⑰ 제14조 6항에 명시한 'K리그 신인선수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신인선수는 등록할 수 없다.
  - ⑱ 선수 및 팀 등록비 납부는 협회 등록 규정을 준수한다.

## 제6조 스태프 등록

- ① 코칭스태프(감독, 코치, GK코치, 피지컬코치)와 팀스태프는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단, 1일전이 주말 또는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주말 또는 법정 공휴일 전일 까지로 한다.
  - 1) 코칭스태프(피지컬 코치 제외)는 KFA P급 또는 AFC P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 1명을 포함하여 최소 2명 이상을 등록해야 한다. 피지컬코치의 경우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하며, 등록 여부는 연맹의 판단에 의한다.

- 2) 제1호의 감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궐위된 경우 클럽은 즉시 업무대행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 3) 제2호의 업무대행자가 KFA P급 또는 AFC P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클럽은 해당 업무대행자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 자격증을 보유한 감독을 등록하여야 한다.
  - 4) 팀스태프는 팀매니저, 통역, 주치의, 의무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재활 트레이너 포함), 스카우터, 전력분석관, 장비담당자 등이 등록 가능하며, 등록 시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의무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재활트레이너 포함)의 관련 자격증은 본 조 제2항 각호에 의한다.
  - 5) 공식경기 중 (그라운드 사전 훈련~경기 종료 시까지) 기술지역 및 벤치의 출입은 등록된 코칭스태프와 팀스태프(스카우터, 전력분석관, 장비담당자 제외)만이 가능하다. 경기 중 선수 지도행위는 코칭스태프만이 가능하며, 피지컬 코치는 사전 훈련 및 하프타임 워밍업 시에만 선수 지도가 가능하다.
  - 6) 시즌 중 변경되는 코칭스태프와 팀스태프는 연중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최종 등록승인 여부는 연맹이 결정한다. 등록방법은 협회 joinkfa, 연맹 프레스페이지 등록 절차를 따른다.
  - 7) 모든 코칭스태프는 등록 시 연맹 의무위원회가 정한 'K리그 메디컬 체크 리스트'를 따른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단, 시즌 중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 8) 클럽은 KFA 1급 또는 AFC A급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등록선수를 코치로 등록할 수 있다.
- ② 클럽은 전문의 면허증이 있는 의사(이하 '팀닥터') 1명과 아래와 같이 의무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의무트레이너를 보유해야 한다.  
단, 국가공인 물리치료사 면허를 보유한 의무트레이너는 반드시 보유 한다.
- 1) CPR 자격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
  - 2) 의무 트레이너 자격 조건
    - 가. 국가공인 물리치료사
    - 나. 대학병원 스포츠의학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자 중 의무위원회가 자격을 인정한 자
    - 다. 의무위원회가 자격을 인정한 자 또는 의무위원회가 승인한 자격증 보유자
- ③ 팀닥터와 의무트레이너 임무는 아래와 같다.
- 1) 팀닥터와 의무트레이너는 소속 클럽의 홈경기에 참가하여야 한다.
  - 2) 팀닥터와 의무트레이너는 연맹이나 연맹 의무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거나 지정하는 세미나 또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3) 선수단 교육 등 연맹이나 연맹 의무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 군(軍) 입대 및 학교 진학 선수

- ① 선수가 계약 기간 중에 병역복무를 위해 입대할 경우, 계약기간은 정지되며 전역과 동시에 원소속 클럽으로 복귀한다. 군팀 입대 선수는 군 표준 임대계약서에 따른 임대계약을 체결 (계약종료 선수, 자유계약공시 선수 제외)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선수는 입대한 군팀의 선수로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임대계약기간 중, 원소속 클럽과 타 클럽과의 이적 또는 임대 합의는 효력이 없다.
- ②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한 선수는 소속 클럽의 동의를 얻어 소속 학교의 아마추어 선수로서 제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수와 소속 클럽간 계약기간은 정지된다.
- ③ 병역복무 및 상급학교 진학으로 정지되는 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에서 제외되며 자동 연장된다.
- ④ 상기 제1항, 제2항의 선수가 전역 또는 졸업(중퇴) 시, 원소속 클럽은 입대 (또는 진학) 당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변경 하여, 전역 또는 졸업 (또는 중퇴) 후,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할 경우, 전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자동등록 된다.
- ⑤ 전역 또는 졸업(중퇴) 당해 12월 31일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입대 또는 진학 연도에 체결된 기본급연액을 12월 31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 클럽과 선수가 사전에 기존 계약을 갱신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를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⑥ 소속 클럽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한 선수는 전역 후 14일 이내에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단, 국가대표팀 차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대일이 변경됨으로써 원소속 클럽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입대하게 된 경우는 제1항에 따른다.

## 제8조 이중국적 보유자 및 귀화의 경우

- ① AFC, ASEAN 가맹국의 국적으로 이중국적을 보유한 외국인 선수가 해당 국적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 1) 해당 협회의 대표팀으로 공식대회에 출전한 경우
  - 2) FIFA규정에 의거 해당 협회의 대표팀 출전 자격을 갖춘 기간이 1년을 경과한 경우
- ② 이중국적을 보유한 외국인 선수의 국적을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는 것은 정기등록기간 중 시즌 개막 이전까지만 할 수 있다.
- ③ 외국인 선수 또는 지도자가 귀화하고자 할 경우 국내법을 준수하며, 귀화 즉시 국내 선수 또는 국내 지도자 자격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제9조 자유 계약 선수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선수는 클럽 또는 선수의 요청으로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자유계약선수는 어느 클럽과도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거 등록할 수 있다. 단, 동일 등록기간 내,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 클럽으로의 재등록은 불가하다.
  - 1) 클럽과 선수간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 2)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연맹 규정에 의해 클럽의 보유선수로 간주되는 선수의 보유권을 포기할 경우
- ② 클럽과 선수가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에 의해 정한 잔여 연봉은 양자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 ③ 클럽과 선수 간 계약이 어느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는 경우 클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한다.
  1. 클럽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기본급연액 전액. 단, 잔여 계약기간 중 기본급연액이 정해지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시점의 기본급연액을 적용한다.
  2. 선수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 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1/365을 곱한 금액

## 제10조 기타

- ① 클럽이 타 클럽의 선수 계약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선수의 등록 공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맹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연맹은 선수 계약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선수의 선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연맹은 상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 또는 피해를 입은 클럽의 요청에 따라 무고한 이의를 신청한 클럽을 상대로 보상금 지급 또는 상벌위원회가 정하는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④ 선수는 소속 클럽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다른 직업을 겸업할 수 있다.
- ⑤ 연맹 선수규정에 위배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그 계약을 체결한 해당클럽(관련 임직원 포함)과 선수는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8조 가.항 (2)호에 의거 처벌된다.
- ⑥ 선수 또는 코칭스태프로 등록을 신청한 자가 미납한 상벌위원회 징계 제재금이 있는 경우, 제재금과 상벌규정 제20조 9항에 의거한 소정의 지연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맹은 해당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제11조 신인선수 선발 대상

- ① 신인선수는 만16세 이상으로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프로 클럽에 선수로서 소속된 사실이 없고 당해 연도에 처음으로 K리그에 등록하는 국내 선수를 의미한다.
- ② 선발대상 부적격자 또는 서류 미비자는 등록이 불가하며, 모든 책임은 해당 클럽에 있다.

## 제12조 신인선수 선발 방식

- ① K리그 최초 입단 선수의 선발 방식은 자유선발, 우선지명 방식으로 선발한다.

### 제13조 신인선수 계약 및 등록 절차

- ① 신인선수(신인계약조건 대상자 포함) 계약 체결 및 등록은 연맹이 정한 등록기간에 할 수 있다.
- ② 클럽은 신인선수와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맹에 제출한다. 연맹은 클럽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이의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선수등록을 하고 이를 모든 클럽에 공시한다.
  - 공통(필수) : 계약체결 확인서(공문), 계약서, 선수등록 전 폭력 등 범죄사실 유무 확인서
  - 실업팀 선수 : 이적확인서
  - 대학팀, 고교팀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 지원서
  - 대학팀 중퇴 및 휴학중인자 : 제적 또는 휴학증명서, 이적확인서
  - 대학팀 재학중인자 : 재학증명서, 이적확인서
  - 해외클럽과 아마추어 신분으로 계약을 체결한자 : 계약종료(예정)확인서, 해당 계약서(사본)
  - 협회 미등록자 : 주민등록등본
  - 선수 신분 확인을 위해 연맹이 요구하는 추가서류

### 제14조 자유선발, 우선지명

- ① 본 조는 모든 신인선수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② 신인선수의 연봉
  - 1) 프로 최초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동안 매년 기본급연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조정금액은 전년도 기본급연액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2) 프로 최초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중 국내 타 클럽으로 임대되거나 국내/외 프로, 아마추어팀에서 임대복귀 하더라도 상기 1)호는 적용되어야 한다.
- ③ 계약기간 및 기본급연액은 다음과 같다. 단, 추가등록기간에 자유선발 또는 우선지명 신인선수를 등록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한 해의 12월 말일까지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한다.

구분	등급	인원	계약기간	계약금	기본급연액
자유 선발	S	3명	5년	최고 1.5억	3,600만원
	일반	무제한	1년~5년	미지급	2,400~3,600만원
우선지명		무제한	5년	최고 1.5억	3,600만원
			3 1년~5년	미지급	2,400~3,600만원

<변경: 2022/10/24 개정>

- ④ 자유선발 선수
  - 1) 우선지명 선수를 제외하고 2016년부터 입단하는 모든 신인선수들은 자유선발로 선발한다.

2) 신규 창단 클럽에 부여되는 선발방식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우선지명 선수

1) 클럽 우선지명

가. 각 클럽은 규정 '유소년 클럽 시스템 운영 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에 한해 우선 지명할 수 있으며 우선지명 선수 명단을 매년 9월말까지 연맹에 서면 제출해야 한다.

나. 연맹은 접수된 클럽시스템 우선지명 선수명단을 접수 마감 후 15일 이내에 각 클럽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 클럽 산하 클럽시스템 출신 선수는 해당 클럽에 입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계약금 지급선수는 계약금 최고 1억 5천만원, 계약기간 5년, 기본급 3,600만원로 계약하며, 계약금 미지급선수는 계약기간 3~5년, 기본급 2,400만원~3,600만원으로 한다.

2) 우선지명선수가 해외 리그로 진출한 경우

가. 클럽의 우선지명을 받은 선수(이하 '우선지명선수'라 함)가 우선지명을 한 클럽(이하 '우선지명클럽'이라 함)에 입단하지 않고 해외 리그(프로 리그와 아마추어 리그를 불문하며 이하 같음)에 진출한 경우, 우선지명선수는 우선지명클럽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이적, 임대를 포함한 어떠한 형태로든 우선지명클럽이 아닌 K리그 내 다른 클럽에 입단할 수 없다.

나. 우선지명선수가 우선지명클럽에 입단하지 않고 해외 리그(프로/아마추어)에 진출했다가 다시 우선지명클럽에 입단할 경우 선수의 계약기간과 연봉은 해외 진출일 당시 시행중인 선수규정에서 정한 우선지명선수 계약조건에 따른다.

다. 우선지명선수가 우선지명클럽에 입단하지 않고 해외 리그에 진출했다가 해외 진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우선지명클럽의 서면동의를 받아 K리그 내 타 클럽에 입단할 경우 선수의 계약기간과 연봉은 해외 진출일 당시 시행중인 선수규정에서 정한 자유선발 신인선수의 계약조건 및 각 등급별 인원수에 따른다.

라. 우선지명선수가 우선지명클럽에 입단하지 않고 해외 리그에 진출했다가 해외 진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우선지명클럽의 서면동의를 받아 K리그 내 타 클럽에 입단할 경우 선수의 계약기간과 연봉은 자유계약선수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마. 본 항에서 우선지명선수의 해외 진출일은 국제이적동의서가 발급된 날로 한다.

⑥ 기타

1) 본 규정 제4조 8항에서 명시한 건강검진과 관련한 책임은 클럽에 있으며, 계약체결 후 건강검진 결과를 사유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2) 프로 최초 계약 만료 후 또는 계약갱신으로 재계약할 경우, 계약기간 및 연봉은 선수와 클럽 간의 협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3) 국내 아마추어 선수가 해외 프로팀에 입단 후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5년 이내에 임대로 국내 복귀는 불가하다.

해외 진출일은 '국제이적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 2012년 5월 23일 이전, 해외에 진출한 경우

- 자유계약

나. 2012년 5월 23일 이후부터 2015년 4월 13일 이전까지 해외에 진출한 경우

- 해외진출 당시 신인계약조건으로 자유이적(임대로 국내복귀 불가)
- 다. 2015년 4월 14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경우
  - 5년 이내 국내복귀 시 신인선수로 간주하며 제14조 ③항의 일반 등급 이하 조건으로 복귀 가능하다.
  - 5년 경과 후에는 자유계약
- 4) 클럽은 자유선발선수와 계약 체결 시 출신 학교, 지도자 등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별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8조 가.항 (3)호에 의거 처벌된다.
- 5) 프로입단 계약과 관련하여 별도 지원(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모든 것)이나 이면계약(연맹에 제출된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양자 간 일체의 합의)는 절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별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8조 가.항 (1)호에 의거 처벌된다.
- 6) 모든 신인선수는 연맹에서 개최하는 'K리그 신인선수 교육'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다만 각급 대표 선수 피선발, 국제대회 출전 등의 사유로 위 신인선수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연맹이 별도로 지정하는 교육에 참가하여야 한다.
- 7) 신인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같은 등록기간 중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양수 클럽과 선수 간 계약은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신인선수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단, 양수 클럽은 선수에게 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
- 8) 제7호의 경우 계약기간 중 기본급 연액의 조정은 제2항 제42호에 따른다.

## 제15조 육성 지원금

- ① 당해연도 등록한 프로 신인 선수의 해당 클럽은 협회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육성지원금을 해당 학교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육성지원금에 대한 시행 규정은 협회 규정에 따른다.
- ③ 육성지원금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자유선발(S) : 2,500만원  
자유선발 일반 및 우선지명 선수 : 1년차 기본급의 50%
  - 2) 해당 연도의 K리그2 구단이 선발한 선수의 육성지원금은 1)항의 50%로 한다.
  - 3) 자유선발 일반 선수 중 1년 이하 계약의 경우는 육성지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제16조 FA선수 자격 취득

- ① 2004년까지 프로에 최초 등록된 국내 선수 중, 계약기간 동안 소속 클럽이 치른 한국프로축구연맹 주최 공식 경기의 50% 이상에 출전한 선수는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FA선수 자격을 취득한다. 단, 각급 국가대표팀 소집기간 중 있었던 소속 클럽의 공식 경기는 출전한 경기로 간주한다.
- ② 2004년까지 프로에 최초 등록된 국내 선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선수는 아래의 각 호에 의한다.

- 1) 원 소속 클럽과 재계약해야 한다.
  - 2) 원 소속 클럽과 선수 간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클럽 또는 해당 선수는 선수 등록 마감일까지 연맹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신청을 한 후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선수와 구단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3) 원 소속 클럽이 상기 제1호 및 제2호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수는 선수규정 제8조에 의거 자유계약선수 공시를 요청할 수 있다.
  - 4) 원 소속 클럽과 재계약하지 않고 해외 클럽에 입단하였다가 국내 클럽으로 복귀할 경우에는 선수 규정 제20조를 적용한다.
- ③ 2005년부터 입단한 선수 중 만 33세 미만 국내 선수는 보상금 제도를 적용하며, 아래의 각 호에 의한다.
- 1) 계약 종료 선수의 이적 시 반드시 양수클럽이 원소속 클럽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상벌규정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2)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연도 기본급연액의 100%, 최대 3억원으로 한다.
  - 3) 보상금 지급 대상은 원소속 클럽에서 계약 종료 직전 연도부터 2시즌 연속(임대 제외)으로 등록된 선수로 제한한다. 단, 병역복무기간(사회복무 기간 포함)과 학교 진학 선수는 제2장 6조 1항에 의거 계약 정지기간으로 적용된다.
  - 4) 보상금은 동일 디비전 내에서의 이적 또는 하위 디비전에서 상위 디비전으로 이적 시 지급하며, 상위 디비전에서 하위 디비전으로 이적시에는 미지급 한다.
  - 5) 원소속 클럽, 양수 클럽에 대한 디비전 적용은 다음과 같다.
    - 원소속 클럽 : 해당 선수 계약만료일 기준 디비전
    - 영입 클럽 : 선수 이적 시 영입 클럽의 디비전
  - 6) 보상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국내/외 프로, 아마추어팀에 입단 후, 2년 이내(군 복무기간 제외)에 국내 타 클럽으로 이적(임대)할 경우, 원소속 클럽은 해당 클럽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국내 타 클럽 등록 시 연령기준 적용) 단, 2년 경과 후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7조 계약기간 만료 선수 공시

- ① 클럽은 당해 연도의 12월 말일에 계약이 종료되는 소속 선수의 명단을 6월 15일까지 연맹에 제출한다.
- ② 연맹은 각 클럽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당해 연도 계약기간 만료 예정 선수의 명단을 검토하고 6월 30일까지 이를 공시한다.

## 제18조 계약기간 만료 선수와의 교섭 및 계약 체결

- ① 클럽은 7월 1일부터 연맹이 공시한 명단에 포함된 당해 연도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다른 클럽 소속 선수와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단, 교섭을 개시할 경우 사전에 해당 선수의 현재 소속 클럽에 서면으로 교섭 개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선수와의 계약 체결은 해당 선수와 현재 소속 클럽과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클럽 및 선수는 상별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8조 제 가.항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제19조 FA선수 이적료

- ① 2004년 까지 프로에 최초 입단하여 FA자격을 취득한 선수가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양 클럽 합의에 의해 양수 클럽은 원소속(양도) 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양도, 양수 클럽 간의 이적료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 기준에 의해 처리한다.

[이적료 산출 기준]

연령	계수	$[(X+Y+Z) \div 3] \times$ 연령별 계수 X : 現 연봉 Y : 원소속 클럽이 제시한 차기 연봉 Z : 이적 클럽이 제시한 연봉
만 19세 ~ 21세	8	
만 22세 ~ 24세	6	
만 25세 ~ 27세	4	
만 28세 ~ 30세	3	
만 31세 ~ 33세	2	
만 34세 이상	0	

※ 원소속 클럽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 "Z"에 해당)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전년도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 ③ FA선수가 이적 이후(이적료 지급 이후) 양도, 양수 클럽 간의 이적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실제 연봉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이적(양수)클럽은 이적 선수에 대한 당해연도 납세증명(원)을 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적(양수)클럽은 차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원소속 클럽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20조 해외이적 FA선수의 국내복귀

- ① 2004년 까지 프로에 최초 입단하여 FA자격을 취득 후 이적료 없이 해외 클럽에 입단한 FA선수가 만34세 이전에 국내 클럽으로 복귀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은 선수의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 ② 상기 1항에 따른 이적료는 영입클럽과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클럽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단, 이적료 협의가 결렬될 경우, 이적료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연령	계수	$[(X+Y) \div 2] \times$ 연령별 계수 X : 해외진출 이전 최종 소속팀에서의 연봉 Y : 영입 클럽이 제시한 연봉 *연령별계수 : 국내복귀시 연령 기준 (단, 2009년 1월29일 이후 해외진출 선수는 해외진출시 연령기준)
만 19세~21세	8	
만 22세~24세	6	
만 25세~27세	4	
만 28세~30세	3	
만 31세~33세	2	
만 34세 이상	0	

※ 영입 클럽이 제시하는 차기 연봉("Y"에 해당)중 기본급을 제외한 수당은 해외진출 이전 연도의 기록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 ③ 본 조항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해외에 진출한 선수부터 적용한다.

## 제21조 미계약 FA선수

- ① 양도, 양수 클럽 간의 이적료 협상 결렬로 인하여 FA자격 취득 선수가 연맹이 정한 FA선수 등록마감일까지 계약체결 및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4조 ⑤항에 의거, 연맹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약체결 후 등록할 수 있다.
- ②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맹이 정한 FA선수 등록마감일까지 어느 클럽과도 계약 및 등록하지 못한 FA자격 취득 선수는 다음 등록기간에 원 소속팀의 FA선수가 된다.

## 제22조 이적

- ① 클럽은 선수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중 다른 클럽과의 양도·양수(이하 '이적') 합의에 따라 클럽의 본 계약상 권리·의무를 다른 클럽에 양도할 수 있다. 단, 이적 이후의 계약기간과 연봉은 양수 클럽과 선수 간 합의에 따라 본 계약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클럽이 다른 클럽과 선수의 이적에 합의한 경우 선수는 이에 응하여 양수 클럽에 합류하여야 한다. 단, 양수 클럽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클럽은 다른 클럽과 선수의 이적에 합의하는 즉시 선수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적의 이유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 ④ 클럽은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제3항의 고지 및 설명일로부터 양수 클럽에 합류하는 날까지 3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의 연봉을 지급한다.
- ⑤ 선수가 제4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도록 양수 클럽에 합류하지 않는 경우, 클럽은 합류하지 않은 기간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⑥ 양수 클럽이 양도 클럽에 이적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적을 중개한 선수중개인에게 협회 '선수중개인 관리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양수 클럽은 이적확인서, 이적합의서, 계약서를 첨부하여 연맹에 이적 선수로 등록 공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⑧ 연맹은 위 제7항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고 그 절차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양도 클럽의 등록을 말소하고 양수 클럽의 선수로 등록 공시한다.
- ⑨ 클럽이 승부조작 또는 그 사전담합에 가담한 선수를 다른 클럽에 양도하였다가 사후에 적발될 경우 양도 클럽은 그 이적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적료 또는 그에 해당하는 대가) 전액을 양수 클럽에 배상하여야 한다.

## 제23조 선수 임대

- ① 클럽은 소속 선수와의 계약 기간 중 선수를 다른 클럽에 임대할 수 있다.
- ② K리그 클럽 간 선수 임대의 기간은 5개월 이상으로 하되, 원소속 클럽과 선수 간 계약의 잔여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본 조에 따른 임대의 절차, 방법, 임대 전후 선수의 지위 등에 관하여는 제22조의 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클럽이 타 클럽에 임대할 수 있는 만 23세 이상 선수의 수는 아래 각 호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클럽이 타 클럽으로부터 임대받을 수 있는 만 23세 이상 선수의 수도 같다.
  - 가. K리그 및 하부리그(K3리그, K4리그 등) 등에 소속된 국내 클럽 간 임대의 경우 5명
  - 나. 국내 클럽 중 동일 클럽 간 임대의 경우 1명
  - 다. K리그 클럽과 해외 클럽 간 임대의 경우 8명
- ⑤ 군복무를 위한 군팀 임대 및 병역대체복무 수행 기간 중의 하부리그 클럽 임대는 제3항 각 호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K리그 클럽 간 선수 임대의 경우 원소속 클럽을 상대로 한 경기에 해당 선수가 출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없다.

## 제24조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

- ① 선수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양도, 양수 클럽 간의 합의에 의한다.
- ② 프로 선수가 이적료 지급을 회피하고자 아마추어 팀 입단 후 2년 이내에 프로 팀에 재입단할 경우, 최종 소속 프로 팀은 입단할 프로 팀에 이적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3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이적료를 청구할 수 없다.

## 제25조 선수 연봉 지급

- ① 연봉은 제 2조 3항에 의하며, 지급방법은 클럽과 선수간의 합의에 의한다.
- ② 계약서에 기재하는 모든 금액은 세금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그 소득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선수가 부담하되, 클럽은 연봉 지급 시 제세공과금을 원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클럽은 선수가 공상(훈련 또는 경기 중 입은 상해 및 질병)이 아닌 부상, 질병 또는 연맹의 제재(징계)로 인하여 연속으로 45일 이상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5일을 초과한 기간 동안 1일당 연봉의 1/36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④ 선수와 클럽이 비시즌(1~2월) 훈련기간 중 연봉협상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클럽은 선수에게 비시즌 기간동안 전년도 기본급연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계약 체결 후 계약된 연봉의 기본급연액을 일할계산한 금액과 기지급된 급여를 비교하여 기지급 급여가 높을 경우 선수는 차액을 클럽에 즉시 반환하며, 연봉의 기본급연액이 높을 경우 클럽은 선수에게 차액을 즉시 지급한다.

- ⑤ 본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및 대한축구협회(KFA)와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에 의한다.

## 제26조 도핑방지

- ① 선수는 최소 연2회(온라인, 대면 교육)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② 반도핑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의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 국제축구연맹(FIFA) 도핑방지 규정, 아시아축구연맹(AFC) 도핑방지 규정을 적용한다.

## 제27조 보칙

- ① 유소년 클럽 소속 선수의 프로경기 출전을 위한 계약(이하 '준프로계약'이라 한다) 및 준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K리그 공식경기 출전에 관하여는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
- ② 준프로계약에 대하여는 본 규정 제1조, 제3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 제4조 제9항, 제26조를 준용한다.
- ③ 준프로계약을 체결한 선수의 유소년 클럽 소속 등록에 관하여는 대한축구협회 등록규정에 따른다.

## 부칙

1. 본 규정(규칙) 및 필요에 의해 연맹이 별도로 정하는 세칙 또는 기준 등의 시행일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회의 의결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제16조 제3항은 2020년 12월 31에 원소속클럽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2021년 FA자격을 취득하는 선수에게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 개정내역

2019/12/02	개정
2020/01/20	개정
2020/12/15	개정
2021/01/18	개정
2021/10/08	개정
2021/11/11	개정
2021/12/07	개정
2022/01/17	개정
2022/10/24	개정



한국프로축구연맹

[www.kleague.com](http://www.kleague.com)

